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03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0. 10. 20.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다투지 않는 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89. 4. 13. 설립되어 [redacted] [redacted]군 E에서 골프장업과 관광개발 및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8. 14. [redacted]도 [redacted]군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마치고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B, C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2016. 12. 2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6. 12. 31. 기준 주식지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주	2015. 12. 31. 기준		2016. 12. 31. 기준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원고 A	30,800	32.42	78,300	82.42
원고 B	1,000	1.05	1,000	1.05
원고 C	15,700	16.53	15,700	16.53
F	47,500	32.42	-	-
합계	95,000	100	95,000	100

다.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재표상 유형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취득원가(원)	감가상각누계액(원)	미상각잔액(원)
합 계	94,759,375,053	19,658,854,483	75,100,520,570
토 지	15,992,063,289		15,992,063,28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코 스	33,248,987,513		33,248,987,513
건 물	23,105,097,619	7,932,431,696	15,172,665,923
구 축 물	15,490,928,742	5,103,189,025	10,387,739,717
차량운반구	3,428,607,905	3,251,974,051	176,633,854
집기비품	3,493,689,985	3,371,259,711	122,430,274

라. 피고는 원고들이 2016. 12. 2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였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2016. 12. 31. 당시 유형자산의 총 가액에서 집기비품의 가액을 제외한 74,978,090,296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지분율에 따라 안분한 각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표준(이하 '이 사건 각 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8. 2. 8.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일반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한 뒤 2003. 12. 12.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4,357,429,964원(아래 표 비고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기재 중 ①번), 위 취득세 납부 후 발생된 비용 중 재무재표상 유형자산가액으로 계상되었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1,079,362,910원(아래 표 비고란 기재 중 ②번),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며 납부한 취득세 5,625,381,555원(아래 표 비고란 기재 중 ③번), 합계 11,062,174,429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재표상 유형자산가액에 계상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유형자산	제외(원)	적요	이유	비고(원)
토지	1,295,295,343	취득세	세금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③
코스	909,142,604	장비사용료	완성된 코스의 유지관리비	①
	117,191,300	조경공사-꽃	1년생 꽃 식재비로 자산성격이 아님	①
	273,535,098	조경관리-잔디	완성된 코스의 유지관리비(비료, 농약, 제초 등)	①
	80,000,000	낙뢰방지시설	건축물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①
	30,940,000	입간판	골프장 구역 밖 도로에 설치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①
	954,500,317	취득세	세금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③
건물	2,389,933,762	취득세	세금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③
구축물	2,603,437,585	도로	민원해소용 골프장 구역 밖 대체도로(기부금 성격) 등	①: 2,305,048,675 ②: 298,388,910
	26,500,000	오수처리장	오수처리 관리비로 자산성격이 아님	①
	1,099,464,912	전기조명	전기조명 공사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①: 318,490,912 ②: 780,974,000
	8,162,000	가드레일	골프장 구역 밖 도로에 설치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①
	985,652,133	취득세	세금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③
공통	288,419,375	공통배분비용	건설중인자산에서 본계정으로 대체되면서 분배된 금액	①
합계	**11,062,174,429**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취득세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고,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재표상 유형자산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중 집기비품 부분을 제외한 토지, 골프장 코스,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각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토지, 골프장 코스,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원고들은 2016. 12. 21.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0%를 취득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6. 12. 21. 이 사건 회사의 위 토지, 골프장 코스,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표준 등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상 위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12. 21.에 가까운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재표상 유형자산가액 중 위 과세대상들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의 유지·관리, 민원처리 등을 위해 소요된 각종 비용들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이다. 그런데 I) 통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그 취득가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 2, 3, 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 2, 3항), 이에 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II)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 제10조 제4항에 관한 것이 아닌 점, III) 따라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법인의 장부가액에서 각종 비용들을 제외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점, IV)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들과 취득세는 이미 이 사건 회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장부상 자산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자본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V)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장부를 통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므로,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점, VI)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자산의 가액에서 임의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 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혹은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03년경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던 금액 중 4,357,429,964원이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할 당시 적용된 과세표준 산정기준과 과점주주인 원고들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혹은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과세표준에서 위 4,357,429,964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 취득 당시 34,740,885,038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14,933,274,862원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어려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이고, 피고는 2004.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 중 누락된 18,936,921,197원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하여 취득세 653,704,71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4,357,429,964원이 모두 2003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별지1

목 록[1)]

당사자	처분일	세목	부과처분(원)	다투지 않는 세액(원)	다툼 세액(원)
	2018. 2. 8.	취득세	1,614,012,520	1,375,883,110	238,129,410
		농어촌특별세	136,682,470	116,516,505	20,165,969
	2018. 2. 8.	취득세	20,561,890	17,528,220	3,033,670
		농어촌특별세	1,741,270	1,484,370	256,900
	2018. 2. 8.	취득세	323,703,300	275,944,510	47,758,790
		농어촌특별세	27,412,770	23,368,330	4,044,440
합계			2,124,114,220	1,810,725,045	313,389,179

1)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